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 9. .

법제처 심사 전

법무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 및 법무부 소속기관의 하부 조직의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고, 법무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난민심의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9. 00. ~ 9.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중 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 “23”을 “22”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출입국관리서기 4 다음에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를 신설한다.

별표 5의2 중 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 “23”을 “22”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출입국관리서기 4 다음에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를 신설한다.

별표 1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무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5명 (4급 1명, 5급 1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나급 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2) 법무실 송무심의관	1명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 나급)	2025년 3월 31일까지
3) 인권국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9명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경위 1명, 경사 1명)	2027년 3월 31일까지
4) 국제법무국	1명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 나급)	2026년 6월 30일까지

5) 국제법무국 국제투자분쟁과	3명 (3·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2025년 3월 31일까지
6) 국제법무국 국제법무지원과	6명 (4급·검사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2026년 6월 30일까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5]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	•	•	-1
•	•	•	
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	<u>23</u>	<u>22</u>	
•	•	•	
•	•	•	+1
<u>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u>	<u><신 설></u>	<u>1</u>	
•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5의2]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	<u>23</u>	<u>22</u>	-1
•	•	•	
•	•	•	
<u>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u>	<u><신 설></u>	<u>1</u>	+1
•	•	•	
•	•	•	